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안 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 신설)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계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기간(안 제13조제1항제15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캄보디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안 제21조제23항, 제23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20호, 같은 조 제3항제20호 및 제24조제1항제15호 신설, 제22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제32조제13항)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상대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에 캄보디아를 포함시킴.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안 제34조제8항제5호 신설,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7항)

1) 무역위원회는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캄보디아에 통보하도록 함.

2) 무역위원회는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가 적절한 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도록 함.

3)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시작한 경우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캄보디아에 제공하고 캄보디아의 수출자 등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20. ~ 6.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7과 같다.

제1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제21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베트남”을 “베트남, 캄보디아”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3조제2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제23조제3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4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 중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로 한다.

제27조 중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로 한다.

제32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터키”를 “터키, 캄보디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를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로, “베트남,”을 “베트남, 캄보디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를 “베트남, 중국 또는 캄보디아로부터”로, “베트남 대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대사관”을 “베트남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및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캐나다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를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로부터”로, “캐나다 또는 중미 공화국들의”를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의”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베트남”을 “베트남, 캄보디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를 “베트남, 중국 또는 캄보디아로부터”로, “베트남 대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을 “베트남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및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캄보디아: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별표 17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0조에 따라 캄보디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8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는 해당 물품이 대한민국 또는 캄보디아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협정관세율) ① ~ ㉑ (생략) <u><신 설></u>	제2조(협정관세율) ① ~ ㉑ (현행과 같음) <u>㉒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u> <u>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7과 같다.</u>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 ~ 14. (생략) <u><신 설></u>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 ----- ----- ----- ----- ----- -----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② (생략)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 ㉒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 ㉒ (현행과 같음)

<u><신 설></u>	<u>㉓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해야 한다.</u>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② (생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터키,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 영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2. (생략) ④ ~ ⑦ (생략)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 -----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 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 17. (생 략) <u><신 설></u> ② 계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19. (생 략) <u><신 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	----- ----- ----- -----. 1. ~ 17. (현행과 같음) <u>18.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u> ② ----- ----- ----- ----- ----- ----- -----. 1. ~ 19. (현행과 같음) <u>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u> ③ ----- ----- -----	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19.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 ~ 14.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 ----- ----- -----. 1. ~ 19. (현행과 같음) <u>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u>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 ----- ----- -----. 1. ~ 14. (현행과 같음) <u>15.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이하 “약속의 제의”라 한다)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	-----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	⑤ -----	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
자와의 협정 제3.12조, 터키와의	-----	캐나다 또는 캐나다 대사관, 뉴	-----
협정 제4.10조, <u>베트남과의 협정</u>	----- <u>베트남과의 협정</u>	질랜드, 베트남 또는 <u>베트남 대</u>	----- <u>베트남 대사관, 중국</u>
<u>제7.10조</u> , 중국과의 협정 제7.13	<u>제7.10조</u> , <u>캄보디아와의 협정 제</u>	<u>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u>	<u>또는 중국 대사관 및 캄보디아</u>
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또	<u>5.11조</u> -----	에 제공하여야 한다.	<u>또는 캄보디아 대사관</u> --.
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	⑦ -----
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터	-----	콜롬비아, <u>캐나다 또는 중미 공</u>	----- <u>캐나다, 중미 공화국</u>
키, <u>베트남</u> , 중국, 영국 또는 인	-- <u>베트남, 캄보디아</u> , -----	<u>화국들로부터</u> 수입된 물품에 대	<u>들 또는 캄보디아로부터</u> -----
도네시아로부터 각각 수입된 물	-----	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	-----
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	롬비아 및 중미 공화국들의 경	-----
제63조제3항에 따라 그 수입으	-----	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
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	-----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	-----
가하는 경우 수입물품 간 경쟁	-----	합중국, 콜롬비아, <u>캐나다 또는</u>	----- <u>캐나다, 중미</u>
조건이나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	-----	<u>중미 공화국들의</u> 수출자에게 협	<u>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의</u> ---
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	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	-----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	-----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토해야 한다.	-----.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	⑥ -----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	② -----
주, 캐나다, 뉴질랜드, <u>베트남</u>	----- <u>베트남</u> ,	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
<u>또는 중국으로부터</u> 수입된 물품	<u>중국 또는 캄보디아로부터</u> ---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
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
를 시작한 경우 「관세법」 제5	-----	중국, <u>역내경제협정당사국</u> , 중	중국, <u>역내경제협정당사국</u> , <u>캄</u>
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	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u>보디아</u> -----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계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계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

⑦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에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⑥ -----
----- 베트남, 캄보디아 -----

[illegible]

⑧ _____

호의 구분에 따른 약속의 제의 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 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 야 한다.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캄보디아: 상계관세와 관련된</u> <u>약속의 제의</u>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 215 - 4472